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41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김민전·김미애·최수진

박상웅 · 김예지 · 김태호

인요한 · 조배숙 · 김승수

진종오 • 유용원 의원

(119]

제안이유

교육 관련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동이 많은 교실, 복도, 계단 등 학교 내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시하도록 하되, 설치 장소·수량 등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학교장등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하고, 학교장등으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임의 조작 등을 금지함(안 제8조의5 신설).
-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함(안 제71조).

법률 제 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학교장등(초·중등학교의학교장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5에서 같다)은 학생(초·중등학교의 학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5에서같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설치 장소·수량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학생의 안전과 학교(초·중등학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 조의5에서 같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 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 2.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3.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④ 학교장등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4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 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제8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교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②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 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③ 학교장등은 제8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 2. 제8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은 자
- 2.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

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 2. 제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특례) 학교장등은 이 법 시행이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학교장등(초・중등
	학교의 학교장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5에서
	<u>같다)은 학생(초・중등학교의</u>
	학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5에서 같다)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장소・수량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
	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
	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

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 1. 학생의 안전과 학교(초·중등학교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 및 제8조의5에서 같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
 여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
 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
 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할 것
- 3.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 여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 리할 것
- ④ 학교장등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 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 ·요건, 제4항에 따른 영상정보

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의4제1 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교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수행을 위하여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경우

- ②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8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 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렁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③ 학교장등은 제8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제71조(벌칙) <신 설>

<신 설>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 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의4제 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 ·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제71조(벌칙) ① 제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 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 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 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 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

① (생략)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에 따라 공제 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제72조(과태료) ① (생 략) <u><신 설></u>

- 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 2. 제8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 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 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 ③ (현행 제1항과 같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은 자
- 2.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정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 손당한 자
- 제7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 ② (생 략)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 한다.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 2. 제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열람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현행과 같음)
-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_____
- _____
- ___